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0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김성희·최혁진·문진석
이인영·박 정·박지원
강선우·한정애·송옥주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제54조의2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을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기후 회복력과 적응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산업
- 나. 온실가스 감축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 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으로 전환한 산업
- 라. 기후재난(폭염, 한파, 홍수, 가뭄 등을 말한다) 대응 및 회복력 강화 기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마. 기후취약계층 또는 기후취약지역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시설·설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산업
- 바. 농림수산, 보건, 물관리, 국토·도시 등 부문별 적응을 촉진하는 산업
- 사. 기후위험 정보, 예측, 분석 및 모니터링 등 기후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아.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녹색산업 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녹색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산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감축 목표별 이행 전략
3.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적응 목표 및 적응 이행 전략
4. 주요 감축·적응 기술 및 전환 방식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u>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u> 을 말한다.	17. ----- ----- ----- ----- ----- ~~-----~~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기후 회복력과 적응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신설>	<u>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산업</u>
<신설>	<u>나. 온실가스 감축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u>
<신설>	<u>다. 온실가스 감축 방식으로 전환한 산업</u>
<신설>	<u>라. 기후재난(폭염, 한파, 홍</u>

	<u>수, 가뭄 등을 말한다) 대응 및 회복력 강화 기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u>
<u><신 설></u>	<u>마. 기후취약계층 또는 기후취약지역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시설·설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산업</u>
<u><신 설></u>	<u>바. 농림수산, 보건, 물관리, 국토·도시 등 부문별 적응을 촉진하는 산업</u>
<u><신 설></u>	<u>사. 기후위험 정보, 예측, 분석 및 모니터링 등 기후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u>
<u><신 설></u>	<u>아.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u>
<u><신 설></u>	<u>제54조의2(녹색산업 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녹색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u>

다.

② 녹색산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감축 목표별 이행 전략

3.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별 적응 목표 및 적응 이행 전략

4. 주요 감축·적응 기술 및 전환 방식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